

## 2. 建設技術管理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790號 1992. 12. 26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3조제7호의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로 한다.

제9조 제6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8조중 “특례규정 제4조”를 “특례규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13조 제1항제1호중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39조제1항제1호”로, “100억미만”을 “200억원미만”으로 하

고, 동항제2호중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9조제1항제1호”로, “100억원이상”을 “200억원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관계기간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수당 및 여비)”를 “(수당 및 여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제1항중 “50인(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00인)이내”를 “80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20인)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7인”를 “12인”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50인이내”를 “80인이

내”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10인”을 “12인”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1호중 “30억원이상인 공사”를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100억원이상인 공사”를 “200억원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4호중 “100억원이상이고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한 행정기관”을 “200억원이상이고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하는 행정기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1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3억원이상인 공사”를 “10억원이상이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보투자기관(이하 “공사발주관서”라 한다)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

나. 터널·지하철·댐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

다. 막구조·현수구조등 특수한 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 공사

라. 국내에서의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

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

제39조 제2항제1호중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이고”를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이고”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5천만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인 공사”를 “1억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한다.

제50조 제1항제4호중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하 “공사발주관서”라 한다)의 장”을 “기타 공사발주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사발주관서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용역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외국의 용역업자를 감리보조자로 선정하여 감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법·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기술이 있는 다른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2조의 제목 “(시공감리자의 업무등)”을 “(감리자의 업무 및 선정)”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감리전문회사는 시공감리 또는 전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시공감리자로, 별표 1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를 책임시공감리자로, 별표 1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를 책임시공감리자를 보조하는 보조감리자로 선정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
2. 건축사
3. 별표 1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기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시공감리자 및 보조감리자의 공사현장의 상주에 관한 사항과 감리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의 확인등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부표 1]·[부표 2] 및 [부표 3]중 “만능시험기(용량 1톤)”을 각각 “만능시험기(용량 5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종류및 등급 기술 분야	기 술 사		
	기사1급	기사2급	
토 목	토목 및 기초·토목구조·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철도·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 토목·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	토목·건설재료시험	토목·건설재료시험

계속)

건축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전기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건축·건축설비·의장	건축·건축설비·의장
기계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

국토개발	도시계획·조경·측지	도시계획·조경·측지	조경·측지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교통	교통	교통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 공사규모를 적정한 기준으로 조정하고, 심의위원의 수를 증원하며, 건설기술인력의 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건설공사의 감리에 활영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을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는 3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100억원이상의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는 10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200억원이상의 공사로 조정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공사에서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공사로 조정함으로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대형건설공사에 한하여 보다 깊이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함(영 제39조).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건설기술의 세분화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부족을 해소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 및 국방부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수를 현행 50인이내에서 80인이내로 증원함(영 제19조 및 제20조).

다. 현재는 기술사 또는 건축사만이 책임시공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능력에 있어서 기술사와 거의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술자도 책임시공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감리활성화에 따른 기술인력의 부족을 해소함(영 제52조제3항).

〈법제처 제공〉

자연속의 신도시 꿈이있는 미래도시